



보도	필요	· 불요
방법	자료제공	· 회견(설명)
비고	주장	

### 기안용지

(전화: 731. 6323)

분류기호	동축
문서번호	27465-1187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③ 1.
수신처 보존기간	3
시행일자	87. 9.
보조기관	보조기관 동축과장 상위장
기안책임자	주학

시행상 특별취급	시	장
협조기관	법무담당관실사필	
문서통제		
발송인		

경유	각안장조	발신명의	시	장
수신참조				
제목	'87년도 제2차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건



1. 동축 27465-1187 (87. 2. 5) '87년도

가축방역사업계획과 관련됩니다.

2.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하고

각안 시행권자 합니다.

가. 기간 ; 87. 10. 15. ~ 10. 31.

나. 우수 ; 14,000 두

다. 대상 ; 판내에서 기르는 개

라. 요령 ; 구청별 자체계획 수립 실시

1) 시술은 공수의 및 개업수의사 동원

실시

2) 예방주사를 필한 개에 대하여는

실시증명서, 축전패를 축주에게 교부

마. 홍보

1) 각구에서는 동, 통, 반조직 및 반상회

를 통한 홍보방법 등을 강구

2) 공보관은 매스콤을 통한 홍보

3) 서울시수의사회는 회 운영계획에

따라 홍보방법 강구

4)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각급학교를 통한 홍보

5) 지하철본부는 열차내 방송을 통한 홍보

바. 시술료 및 예방약등 구입

1) 시술료 ; 두당 1,500원 (축주부담)

2) 시술재료 : 시술수의사 부담.

3) 예방약 ; 보청 배정분의 소요량  
구청별 구입 (보청 배정분에 대하여는 인수증 제출)

4) 실시증명서, 축전패 ;  
구청별 구입  
사. 기타.

1) 시술수의사는 예방주사 실시대량  
비치 기록 및 실시증명서 발급

2) 실시보고 (구청)

- 매주 월요일 실시실적 우선 보고
- 실시종료후 서면 보고

3) 방편단속 ; 각주는 예방주사 실시  
기간중 특별단속 실시

첨부 : 1. 고시(안) 1부

2. '87년도 제2차 광역예방예방주사 실시

계획 1부 끝.

제 2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같오전

1. 동훈 27465 - 158 (87. 2. 5) '87년도

가족방역사업계획과 관련됨.

2. 다음과 같이 '87년도 제2차 광견병예방

주사를 실시코자하니 <sup>실시기간중</sup> 약품보관을 철저히 하고 실시

안전을 기하기 바랍.

가

사

제1안 가~사 함 이기시행

첨부. 1. 고시문 1부

2. '87년도 제2차 광견병예방주사 실시

계획 1부 끝.

수신처. 서자 1-17 (선업과장)

제3안

수신. 공보관 ~~488~~ 발신. 산업경제국장.

제목. 같오전

'87년도 가족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2차

광견병예방주사 실시를 별첨과 같이 고시 하였기

이를 매스콤을 통하여 널리 홍보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과시문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제 4 안

수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참조 학부국장

제목 광전병 예방주사 실시에 대한 계도 의뢰

1. '87년도 우리시 가족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 2차 광전병 예방주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

는 바짐없이 개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개

기르는 개도 전염이 될수 있음)

2. 특히 광전병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주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방역이 중요시 되는 전염병

이오니 이를 특별히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스  
산

제 1 안 가 ~ 사항 이기시행

첨부 고시본 1부 끝.

제 5 안

수신.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장

제목. 같은건

1. '87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2차 광견병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귀회 운영계획에 따라 홍보방법 등을  
강구하여 본사업 수행에 좋은 실적이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 제1안 가-자항 아기지행  
사

첨부. 고시본 1부 끝.

제 6 안

수신 지하철본부장-419 방신 산업경제국장

제목 같은건

'87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 2 차 광견병예방주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별첨 내용을  
홍보 의뢰하오니 열차내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홍보물 1부 끝.

제 7 안

수신 내부국장                      발송 산업경제국장

참조 행정과장

제목 반상회 공지사항 게재 의뢰

'이 번도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 2 차  
광견병예방주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를 거양코자 하오니 별첨  
내용을 반상회 공지사항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첨부. 반상회 공지사항 자료 1부 끝.

제 8 안

4725

수신 : 농림수산부장관

참조 : 가족위생과장

제목 : 광견병예방접종 실시 보고

1. '87년도 우리시 가족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제2차 광견병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보고 합니다.

가. 실시기간 ; 87. 10. 14. ~ 10. 31.

나. 실시계획수 ; 14,000두

첨부 : 고시문 1부 끝



고 시 (안)

제 157 호  
1987. 9. 15  
서울특별시  
보건국  
동물방역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광견병예방주사 실시

다음과 같이 광견병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87. 9.

서울특별시장

1. 목적 : 광견병의 발생과 퍼지는 것 것을 막기  
위함.

2.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상 : 모든 개

4. 장소 : 인근 동물병원

5. 기간 : 87. 10. 15. ~ 10. 31.

6. 기타 : 본 기간중에 예방주사를 마치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으며 개 주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합니다.

87 번도 제2차 광전방에방주사 실시 계획

구분	계획량(부)	약품배정 (부보)	내 용
총 로	500	350	실시기간 : 87. 10. 15. ~ 10. 31.
총 종	400	280	
음 산	600	420	실시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모든 개
성 동	1,400	980	
동 대분	800	560	신요경비 : 약품비 [국비 70% 지방비 30%
성 분	1,400	980	
도 분	1,700	1,190	약품배정분의 소요량은 각자별 자체추입
운 령	1,300	910	
서 대분	1,000	700	기타 :
마 도	900	630	
강 서	1,100	770	- 예방주사 접종증명서 발급 및 품질분할 철저 이행 - 예방주사 실시기간중 방역 특별안독 실시.
주 로	700	490	
영 등분	500	350	
동 작	700	490	
관 약	700	490	
강 남	700	490	
강 동	400	280	
계	14800	10360	

2960<sup>부보</sup> 2072<sup>부보</sup>

## 보도자료

제목. 광견병예방주사 실시

서울시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보건에 기여하고자 오는 10월5일 부터 10월31일 까지 시내 전역에 걸쳐 개 1,4800 두를 대상으로 가을철 광견병예방주사를 실시합니다.

광견병예방주사는 이 기간중에 시내 전 동북방역에서 실시하며 예방약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주사시술료 1,500원은 개를 기르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는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가축거나 잡아왔어는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되고 개주인은 과징금 ~~대납~~ 됩니다.

## 홍보문

서울시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무서운 병  
이므로 집에서 기르는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  
에서 바깥으로 집중합니다.

서울시에서 알려드립니다.

\* 방충요청기간 10.10. ~ 10.20.

## 반상회 공지 사항

제목 . 광견병예방주사 실시

가을철 광견병예방주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바깥에서 예방주사를 맞히도록 하십시오.

- 실시기간 : 87. 10. 15. ~ 10. 31.
- 주사시술료 ; 두말 1500원 (예방약은 서울시 부담)
- 시술장소 : 시내 전 동물병원

##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질시 ) 1.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을 받을것을 명할수 있으며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
  1.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명령을 하거나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 종계 및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사항을 검사, 주사, 약육 투약 또는 정기검사의 실시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목 적
    2. 지 역
    3. 대상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 ( 살처분 명령 )
  3. 시 도지사는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축견이 옥외에서 배회하는것을 발견한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억류하거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광견병이란  
모든온혈동물의 급성 전염병으로서 광증, 정신장애를 나타내며 결국에는 마비되어 거의 예외없이 죽게되는 병으로 개가 물었을때 침을 통하여 전염되는것이 특징임.

- 가혹전염병예방법 제 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3.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내지 제8조 또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